

# 黃海와 東中國海漁場의 水産資源 保存管理에 관한 海洋法問題

李 秉 鎬 · 崔 宗 和

(釜山水産大學校)

## I. 序 論

韓半島 周邊水域은 世界 三大漁場 中에서도 生産性이 가장 높은 北太平洋漁場의 남서쪽 가장자리에 위치하여 비교적 水産資源이 풍부하며, 또 이 수역의 沿岸國들은 대부분 牧畜業이 크게 발달할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일찍부터 水産物을 動物性 蛋白質食糧의 주요 供給源으로서 이용해 왔고, 경제 수준의 향상에 따라 그 수요 또한 더욱 증대되고 있으므로 海洋漁業分野의 경쟁은 장차 더욱 치열해질 것이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서 1994년 11월 16일 UN 海洋法協約의 발효를 계기로 極東海域에 있어서의 海洋管轄權에 대한 새로운 法秩序改編 움직임도 필연적으로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韓半島를 중심으로 한 黃海·東中國海와 東海는 海洋法上的 半閉鎖海이며, 특히 黃海와 東中國海는 魚種이 다양하고 그 양도 풍부하여 천혜의 어장으로 각광받아 왔는데, 이 어장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漁法은 역시 機船底引網漁業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근세에 들어서는 제2차 世界大戰이 종식되기까지 이 수역의 어장은 대부분 日本의 독무대였고, 따라서 어장의 개발도 주로 日本에 의하여 행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년에 와서 韓國과 中國도 漁業技術이 발달함에 따라 어장은 점점 자국의 管轄水域 외측으로 확대되었고, 그에 따라 연안 3국 어민들에 의한 경쟁적 조업이 행해지게 됨으로써 水産資源은 枯渴된 상태이고, 또한 沿岸國들의 工業化가 촉진됨에 따라 일부 수역의 汚染現象도 심각한 상태에까지 도달하였다. 이러한 악조건 하에서 이 어장의 枯渴된 자원을 회복하고, 環境과 生態系의 파괴를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利害當事國間的 국제적인 협력 뿐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國際漁業關係는 전반적인 海洋法秩序의 테두리 안에서 형성되어야 하며, 漁場管轄權의 문제는 국제 정치적 환경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관하여 冷戰構圖 하에서 국제적인 利害關係가 민감하게 작용했던 東北亞水域의 지리적 중심에 위치한 韓半島가 남북으로 분단되어 對峙狀態에 있고, 또한 韓國과 中國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함과 동시에 1992년 國交가 正常化되기까지 상호 國家主權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黃海와 東中國海漁場에 대한 합법적인 國際漁業秩序의 구축이 불가능하여, 어장이나 水産資源의 管理問題는 사실상 방치되어 왔다. 다만 韓國-日本, 中國-日本 간에는 부분적으로 雙務的인 漁業協定을 체결하여 當事國間的 漁業問題를 해결해 왔지만, 冷戰體制가 종식되고 새로운 海洋法秩序가 정립되어 가는 현 시점에서 이 어장의 관리에 대한 합법적인 共同規範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필연적인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 어장의 管理問題는 장차 각국이 排他的 經濟水域(EEZ) 또는 漁業水域(EFZ)의 선포를 통하여 海洋法에 따른 海洋管轄權을 행사함으로써 해결하는 방안과, 關係沿岸國이 모두 참여하는 共同管理方式에 의한 解決方案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들 두 가지 방안 중 어느 한 쪽도 용이하게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黃海와 東中國海漁場의 管理方式이 현 체제 상태로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 하에, 합법적인 管理方案을 모색함에 있어서, 먼저 이들 어장의 海洋法的 特性和 각 沿岸國의 海洋漁業政策을 개관하고, 이들 어장의 직접 利害當事國인 韓·中·日 3개 沿岸國의 國際漁業關係를 검토한 바탕 위에서, 海洋法的 接近方式에 따라 問題解決方案을 논의하고자 한다.

## Ⅱ. 黃海 東中國海漁場의 海洋法的 環境

### 1. 海洋法的 特性和 各國의 政策

黃海와 東中國海 沿岸國들은 과거 4~5세기 동안 간헐적인 漁業紛爭을 겪어 왔으며, 1950~60년대에 는 심각한 분쟁을 경험하기도 하였었다. 뿐만 아니라, 이 어장의 水産資源管理에 대하여는 이 어장을 주로 이용하는 三大沿岸國인 韓國-中國-日本 사이의 특수한 力士 政治 經濟的 關係로 인하여 相互協力 보다는 競爭的 霧圍氣 속에서 자원의 개발에만 노력을 경주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국제적 和解霧圍氣가 조성됨과 더불어 UN 海洋法協約의 발효를 목전에 둔 새로운 海洋法秩序로의 개편 시대를 맞게 되었다.

이 해역은 沿岸國 국민에 대하여 動物性 蛋白質食糧을 공급하는 중요한 食糧庫이기 때문에, 水産資源의 효율적인 관리는 당연한 중요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 해역의 三大沿岸國은 1990년의 漁業生産量에 있어서 中國이 세계 1위, 日本이 2위, 韓國이 9위를 기록할 만큼 세계적인 漁業先進國들이다. 그리고 韓國은 沿近海漁業 生産量의 80% 이상을, 中國은 70% 이상을, 日本은 15% 이상을 이 海域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더라도 이들 어장이 三大沿岸國의 國民經濟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韓國과 中國의 의존도가 높다.

이 해역의 水産資源은 20세기 초 日本에 의한 底引網漁法의 도입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으며, 1960년대 중반에 이르러 韓國과 中國도 漁業技術의 발달과 더불어 漁獲努力의 급격한 증대로 거의 대부분의 主要魚種은 過剩漁獲되어 沿岸資源의 枯渴現象이 나타났다. 그러자 각국 어민들이 操業水域을 점점 外洋으로 확대함으로써 경쟁적 조업이 심화되고, 그에 따라 資源枯渴現象은 더욱 가속화되기에 이르렀다.

제 2차 世界大戰에서 日本이 패망하자 聯合軍司令部는 McArthur Line을 설정하여 그 때까지 이 어장을 거의 독차지하고 있던 日本漁船의 漁撈活動을 제한하였으나 1951년에 平和條約이 체결됨으로써 McArthur Line이 철폐되자, 日本漁船의 무제한적인 진출은 재개되었다.

이러한 국제 정치적 상황 변화에 대처하여 연안 3국은 자국의 管轄海域에 대한 保護措置를 일방적으로 취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1) 韓國의 政策

먼저, 韓國의 海洋漁業 管轄政策은 역사적으로 주로 日本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해방 이전까지는 일방적으로 水産資源을 수탈당해 왔고, 해방 후에도 항상 對日防禦的 자세를 견지해 왔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자원의 보존이나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지 못했었다. 그러다가 1952년 「隣接海洋의 主權에 대한 大統領宣言」을 선포하여 韓半島 隣近水域의 海洋資源 保存意志를 대외적으로 천명하였는 바, 이것도 주로 日本漁船의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이의 시행을 國內法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1953년에는 위의 선언 내용과 동일한 해역을 管轄水域으로 하는 漁業資源保護法을 제정 시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선언은 1965년 체결된 韓日漁業協定の 발효와 더불어 日本에 대하여는 효력이 중지된 상태이다. 다만 中國을 포함한 다른 외국에 대하여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법적 해석이 가능하며, 1977년에는 영해의 폭을 12해리로 규정한 領海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2) 中國의 政策

中國은 1950년 中國沿岸에 대한 軍事警戒水域(Military Alert Zone), 軍事航行禁止水域(Military Prohibited Navigation Zone), 軍事作戰水域(Military Activity Zone)을 포함하는 이른바 「毛澤東 라인」이라 불리우는 機船底引網漁業 禁止區域을 일방적으로 설정하였는데, 이 조치는 1955년의 日中民間漁業協定の 체결을 통하여 공식화되었으며, 水産資源의 보호를 목적으로 黃海와 東中國海의 中國沿岸을 따라 설정된 機船底引網漁業 禁止區域內에서는 日本漁船은 물론 中國漁船에 대하여도 機船底引網漁業을 금지하였다. 한편, 中國은 1957년에 인근 국가인 北韓과 베트남과도 漁業協定을 체결하였다.

中國은 1958년 역사상 처음으로 12해리 영해를 규정한 領海宣言을 선포하였고, 1992년에는 1958년의 선언을 더욱 구체화하고, 영해 폭을 12해리로 하는 한편 영해 외측에 12해리의 接續水域을 두는 「中國領海 및 接續水域法」을 제정하였다. 1986년에는 中國水産業法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은 漁業許可, 禁漁區와 禁漁期, 休漁期, 産卵 및 越冬期 漁獲禁止, 主要魚種의 繁殖保護와 網目の 크기 制限 등의 水産資源의 保存管理를 위한 규제와 資源造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974년부터 1985년 사이에 海洋漁業環境의 보전을 위한 6개의 주요 汚染防止法律을 제정하였다.

EEZ 선포에 대한 中國의 정책은 아직 명확하지 않으나,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전체로 삼고 있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海洋資源의 探查와 開發에 관한 法體系를 완비하고,
- 둘째, 기본적인 探查 開發政策 수립을 위한 水域別機能을 설정하며,
- 셋째, 水産業法의 시행과 漁業技術의 향상 및 어민의 遵法性을 함양하고,
- 넷째, 沿近海漁業과 遠洋漁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漁場管理를 강화하며,
- 다섯째, EEZ의 海洋環境保護를 위한 法律制定과 施行을 추진하고,
- 여섯째, 黃海, 東中國海, 南中國海의 生態系保存과 生産性向上을 위하여 책임 있는 地域協力協定을 체결한다는 것이다.

## 3) 日本의 政策

日本은 1977년에 영해의 폭을 12해리로 규정한 領海法을 제정하였고, 같은 해에 200해리 EFZ를 설정하는 「漁業水域에 관한 暫定措置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日本은 韓國 및 中國과의 利害關係를 고려하여 이 법을 韓國과 中國에 대하여는 적용을 유보하는 한편, 地理的으로도 동경 135도 이서의 해역에 대하여는 EFZ의 선포 자체를 유보하였다.

## 4) 相互關係

이와 같이 黃海와 東中國海 연안 3국은 海洋法秩序가 개편되어야 하는 현 시점에서 볼 때, 韓國과 中國이 과거에 취했던 一方的 措置를 일단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3국은 모두 기본적으로 영해의 폭을 12해리로 법제화하고 있으므로 沿岸國의 領海 또는 接續水域 밖의 黃海와 東中國海의 법적 성질은 마땅히 公海인 것이다. 그러나 최근 中國은 200해리 EEZ 선포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 해역에서도 본격적인 海洋分割時代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렇게 되면 韓·中·日 뿐만 아니라 北韓과 臺灣 등 모든 關係沿岸國 사이에 大陸棚境界劃定과 더불어 近海漁場의 管轄權을 둘러 싸고 紛爭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黃海와 東中國海漁場은 주로 韓·中·日 3국이 개발 이용해 왔지만, 그 동안 冷戰體制下의 國際政治秩序 속에서는 이 어장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각 沿岸國間의 共同體의 法秩序를 형성하지 못하고, 각국이 일방적으로 國內法을 제정하였거나, 일부 兩者條約에 의하여 규율되어 왔다. 그러나 이 어장에서의 水産資源의 保存과 海洋環境의 保護問題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生産性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國際的인 공동 노력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이 도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 2. 現行制度의 問題點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어장의 枯渴된 水産資源을 회복하고, 海洋漁業環境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關係沿岸國 모두가 과도한 어획을 지양하고 국제적 신의에 입각한 海洋漁業秩序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그 이유는 單一生態系를 형성하고 있는 이들 어장에서 각국의 競爭의 操業活動이 계속 방임된다면 머지 않아 어업이 전면적으로 중단되는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현행의 片務의 혹은 雙務의 漁業管理體制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黃海와 東中國海의 沿岸國이면서 이 어장에서의 주된 漁業參加國인 韓·中·日 3국간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漁業規範이 결여된 채, 韓-日, 日-中 간의 個別漁業協定만으로는 효율적인 자원의 保存管理가 불가능하다. 즉, 이들 漁業協定은 水産資源의 生態學的 고려보다는 韓國과 中國 연안에 대한 日本漁船의 진출을 규제하는 목적 위주로 체결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協定水域의 외측 수역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각국의 競爭의 漁撈活動에 방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둘째, 기존의 漁業協定들은 總許容漁獲量 規制方式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資源管理制度로서는 미흡할 뿐만 아니라, 協定違反漁船에 대한 團東方式도 旗國主義를 채택하고 있어서 실효성 있는

漁業團束을 기대할 수가 없다.

셋째, 기존의 漁業協定들은 資源管理보다는 海域管理에 중점을 둔 것으로서 枯渴狀態에 처한 水産資源의 효율적인 保存措置로서는 더 이상 그 법적 효력을 기대할 수 없다. 특히 12해리 漁業專管水域制度는 영해 폭이 12해리로 정착된 현시점에서 볼 때 그 의미를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資源管理를 위한 실질적 규정이 되지 못한다. 넷째, 漁業協定 또는 海域管轄에 관한 國際協定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되는 것은 沿岸國의 領海基線인 바, 특히 中國의 領海法上 領海基線 설정이나 軍事水域의 설정과 같은 一方的 措置에 대한 國際法上的 합법성 여부가 재검토되어야 할 여지가 있으며, 中國은 1992년의 「中國領海 및 接續水域法」에 의하여 이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領海境界 외측 12해리까지를 接續水域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黃海漁場에 대한 日中漁業協定은 韓國에 의하여 공식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다섯째, 기존의 漁業協定들이 체결된 후 海洋法은 크게 발전하였기 때문에 현실 海洋法體系와의 調和問題가 대두된다. 따라서 이 수역에 대한 현행의 漁業管理體制는 전반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 Ⅲ. 韓·中·日 3국간의 國際漁業關係

#### 1. 韓國과 日本의 漁業關係

##### 1) 漁業協定の 締結

1952년 韓國政府에 의한 平和線宣布는 필연적으로 日本과의 마찰을 유발하였음은 물론, 그 당시 韓國의 漁業技術과 日本의 그것은 비교가 안 되었기 때문에 양국은 어업에 있어서 競爭相對가 될 수 없었고, 따라서 日本漁船의 韓國近海侵犯을 막고자 하는 韓國政府의 노력은 당연한 것이었지만, 日本으로서 公海漁業自由를 주장하면서 韓國의 조치에 극력 항의함으로써 양국 사이의 漁業紛爭은 계속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1956년 韓日漁業協定이 체결될 때까지 韓國에 나포된 日本漁船은 326척이었고, 억류되었던 日本船員은 3,904명에 이르렀다.

어업에 관한 韓·日間의 협상은 1952년 2월부터 시작된 韓日會談의 주요 의제 중의 하나였으며, 14년간의 끈질긴 협상 끝에 1965년 6월 「大韓民國과 日本國間의 漁業에 관한 協定」(약칭 韓日漁業協定)이 서명되고, 같은 해 12월에 批准書를 교환함으로써 이 협정은 발효되었다. 前文과 本文 10개조 및 附屬書로 구성된 韓日漁業協定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국은 領海基線에서 12해리까지의 어업에 관한 모든 管轄權을 배타적으로 행사하는 漁業專管水域을 설정하고, 그 외측에는 共同規制水域을 두어 水産資源의 지속적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한 漁業規制措置를 취하기로 했는데(제 2조), 이 수역 내에서의 年間 總漁獲量은 15만M/T으로 정하고 10%의 가변성을 부여했다. 또 共同規制水域 외측에는 共同資源調査水域을 설정하되(제 5조), 수역의 범위와 구체적

인 조사 내용은 漁業共同委員會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이 수역은 당초 韓國이 협정상에 平和線의 형태를 남겨 두기 위해 共同規制水域의 외측으로부터 平和線까지의 수역을 資源調査水域으로 설정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日本이 협정 속에 平和線을 표시하는 어떠한 형태의 수역도 반대하고, 그 대신 共同調査水域을 설정하여 水産資源에 관한 科學調査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資源保存措置를 취할 것을 수정 제의하여 합의된 것이다.

漁業專管水域內에서의 犯則漁船에 대한 단속과 裁判管轄權은 沿岸國이 배타적으로 행사하며, 共同規制水域에서의 단속과 裁判管轄權은 旗國主義原則에 의하도록 하였다(제4조).

또한 同協定の 운영을 위하여 양국 정부가 임명하는 3인씩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漁業共同委員會를 두기로 하였고, 협정의 解釋과 施行에 관한 紛爭은 우선 外交經路를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으며(제6조), 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는 紛爭은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仲裁委員會에 회부하여 그 결정에 따르기로 하는 한편, 이 委員會가 내린 결정은 兩國政府가 그대로 수용하기로 하였다.

협정의 有效期間은 發效日로부터 5년간이며, 그 후에는 어느 一方當事國이 他方當事國에 대하여 協定終了意思를 통고하는 날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갖기로 하였다. 이 협정은 계속 갱신되어 지금도 그 효력이 존속되고 있다.

## 2) 協定締結後 漁業關係의 變化

### (1) 韓國漁業의 發展

협정 발효 후 兩國間의 漁業紛爭은 점차 감소되고 漁業秩序는 차츰 안정되었다. 이와 함께 韓國의 어업이 급격히 신장되었는데, 1961년에 漁獲量 46만 M/T으로 세계 19위이던 것이 30년 후인 1990년에는 6배인 275 M/T으로 성장하여 세계 제 9위의 水産大國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어업이 신장된 것은 기본적으로는 정부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지원과 기업가의 적극적인 투자, 그리고 주로 日本으로부터의 漁撈裝備와 新技術의 도입, 질적 양적으로 향상된 水産技術人力의 양성 등에 기인하지만, 한편으로는 韓日漁業協定 체결에 따른 水産行政機構의 개편, 對日請求權資金 및 漁業協力資金의 도입을 통한 生産基盤의 대폭적 개선 등도 무관하지는 않다고 본다. 즉, 韓日漁業協定은 그 자체가 韓國의 어업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지만 제도적인 재편성과 漁業生産基盤을 새로이 구축함으로써 도약을 위한 촉진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 (2) 北海道 및 濟州道 周邊水域에서의 操業自律規制

1977년 들어 韓·日間에 새로운 漁業紛爭이 발생하여 韓日漁業協定이 일부 수정되기에 이르렀다. 즉, 1960년대 말부터 北太平洋漁場에 출어하기 시작한 韓國의 트롤 어선단은 주로 베링해나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조업했으나, 1977년 소련이 200해리 EFZ를 선포하자 이 수역으로부터 철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그 중 500~5000톤급 어선 32척이 북해도 주변 수역으로 이동하여 日本의 트롤 어업 禁止區域內에서까지 조업함으로써 양국간에 漁業紛爭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이에 日本은 自國漁民들이 준수하고 있는 日本의 국내적 조치인 트롤 어업 禁止區域內에서의 漁撈活

動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해 왔던 바, 이에 대한 韓國의 입장은 근본적으로 동수역이 韓日漁業協定上的의 協定水域이 아니며, 日本의 요구는 일방적인 것이기 때문에 준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양국의 友好關係를 고려하여 韓國은 自律規制를 시행할 용의가 있음을 제시하고, 그 대신 日本도 제주도 주변 수역에서 이에 상응하는 規制措置를 취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1979년 3월부터 1980년 10월에 걸친 회담에서 합의된 주요 내용은 3년간의 有效期間으로 韓國은 북해도 주변 수역에서의 출어 척수를 17척으로 제한하며, 日本은 제주도 주변 수역에서 底引網漁船數를 협정상 270척에서 106척으로 감축하고 同時最高出漁隻數를 66척으로 제한하기로 한 것이었다. 이 제 1차 협정의 有效期間은 1983년 10월말에 만료되었으나, 그 후 5차에 걸쳐 갱신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 2. 韓國과 中國과의 漁業關係

黃海와 東中國海漁場은 과거에는 日本의 독무대였으나, 1950년대 이후 韓國과 中國의 漁撈活動이 활발해지면서 완전히 三巴戰으로 발전하여 복잡한 力學關係를 형성하게 되었다. 우선 韓國과 中國 사이는 韓國戰爭을 통하여 정치적인 敵對關係에 있었으므로 漁業關係에 있어서도 미묘하였다. 즉, 中國은 1950년에 「毛澤東 라인」을 설정함으로써 자국의 近海漁場을 배타적으로 관할하기 시작했고, 韓國도 주로 日本에 대한 漁業資源防禦線으로서 平和線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의 外國漁船의 조업을 규제하였다. 그런데 1965년에 韓日漁業協定이 체결됨으로써 이 平和線이 對日防禦線이라는 의미는 사실상 소멸되었지만, 여타 국가에 대하여는 아직 법적 효력이 존속하고 있다고 볼 때 中國에 대한 防禦線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도 있겠으나, 中國漁船의 침범에 대하여는 관대하게 처리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한편, 1975년 日中漁業協定 체결을 즈음하여 中國은 韓國漁船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고, 1975년 이전에 10척 그리고 그 이후에 8척이 나포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모두 귀환되었으며, 1980년 이후에는 나포된 사실이 없었다. 그러나 韓國은 이러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협의를 요망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지만, 中國이 응해 오지 않았으므로 우리 漁船團에 대한 자율적인 규제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1975년 1월 水産廳訓令으로서 「水産業에 관한 許可事務 取扱規則」을 제정, 日中漁業協定線에서 동쪽으로 위도 30' 내지 90'의 간격을 두고 操業自制線을 설정하였으며, 이 선은 日中漁業協定上的의 資源保護區 및 休漁區 등과 대략 15' 정도의 緩衝海域을 둔 것이었다.

이 操業自制線은 1976년 7월의 「東中國海 安全操業을 위한 指導指針」과 8월의 「黃海 및 東中國海 出漁船에 대한 規制事項告示」에 의하여서도 추인되었고, 이 선에서 동쪽으로 경도 40' 정도 되는 곳에 船團編成強化線을 설정하여 조업을 자율적으로 지도하였다. 그러다가 1979년 1월에 日中漁業協定이 개정되면서 資源保護區가 신설 또는 확장됨에 따라 外務部의 요청으로 操業自制線을 경도 20' 동쪽으로 이동 설정함으로써 그 만큼 어장이 좁아졌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양국간에 和解雰圍氣가 조성되는 한편, 국내적으로는 沿近海水産資源의 고갈로 操業經營收支가 악화되어 漁場擴大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1985년 10월, 水産廳告示(沿近海漁船의 安全操業을 위한 規制事項)에 의하여 操業自制線을 경도 10' 서쪽으로 이동시켜 資源保護區 및 休漁區와의 사이에는 경도 5' 정도의 緩衝海域을 두었다가,

1984년 4월에는 역시 水産廳告示로 操業自制線을 資源保護區 및 休漁區의 외곽선과 일치하도록 조정하였다. 그리고 1992년 6월에는 日中操業協定線과 操業自制線이 일치하도록 재조정하였다.

이와 같이 韓國이 操業自制線을 설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日中漁業協定水域을 공식적으로 승인한 것이 아니고, 양국간의 力學關係가 단순한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한 정치적인 배려였다고 볼 수 있다.

그 후 양국간의 관계가 다소 우호적으로 전환됨에 따라 漁業關係도 개선되어 1989년 12월에는 韓國의 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와 中國의 東海海漁業協會 사이에 「漁船 海上事故處理에 관한 合議書」가 체결되어 1990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公海上에서 조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양국의 어선과 어구에 관련되는 사고를 처리하기 위한 민간 차원의 지침을 정한 것이지만, 양국간의 漁業關係가 개선되고 있는 증표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양국간에 民間次元에서 單純入漁形態의 合作事業과 養殖分野의 漁業協力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간의 漁業關係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1991년에는 中國의 機船底引網漁船들이 1000여회나 제주도 근해의 韓國領海를 침범하여 不法操業을 자행함으로써 문제를 일으킨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 때에 韓國政府는 國交樹立을 목전에 두고 엄격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1992년 8월 24일에는 역사적인 韓中修交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양국간의 국교가 정상화되어 상호 主權國家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게 되었으므로 黃海를 사이에 둔 對向國으로서, 그리고 東中國海漁場의 共同利用國으로서 漁業關係에 있어서도 정상적인 協力關係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양국간의 노력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 3. 中國과 日本과의 漁業關係

#### 1) 背景

黃海와 東中國海는 전통적으로 西日本漁民들의 중요한 어장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1954년 이후는 McArthur Line의 설정으로 어려웠던 때도 있었으나, 1952년 平和條約 체결로 海外漁場 進出封鎖가 해제되자 이 어장의 진출이 재개되었다. 한편 中國은 1949년 中共政權 수립과 더불어 어업의 진흥을 위한 본격적인 노력을 시작함과 동시에 어업을 규제하기 위한 法制度確立을 위해서도 노력을 경주하였는데, 1950년에는 黃海와 東中國海에 트롤 어업 禁止區域을 설정하고 이 수역 내에서는 內外國漁船의 트롤 어업을 全面禁止하였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도 日本漁船이 中國沿岸까지 출어하여 트롤 어업 禁止區域을 침범하자 中國은 1950년 12월부터 나포를 시작하였는데, 1955년 日中民間漁業協定이 체결되기까지 나포된 어선은 158척이었고 선원은 1,909명이었다. 그러자 日本의 수산업계는 中國沿岸에서의 安全操業과 漁業協力關係를 유지하기 위한 民間次元의 관계 개선 노력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1953년 韓國戰爭의 휴전이 성립된 후 中國으로서도 日本과 정치적 접근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日本의 漁業技術을 도입하여 자국 어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양국간의 漁業紛爭 해결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54년 10월부터 시작된 民間次元의 대화를 통하여 1955년 4월 日本의 日中漁業協議會와 中國의 海漁業協會 사이에 民間漁業協定을 체결함으로써 새로운 漁業關係를 구축하였고, 이 협정을



통하여 日本은 「毛澤東 라인」을 공식 승인한 결과가 되었다.

## 2) 民間漁業協定

1955년에 체결된 民間漁業協定은 協定期間을 1년으로 하였으나, 1956년과 1957년 두차례에 걸쳐 연장되었다. 그 후 양국간의 관계가 다시 악화되자 中國은 이 협정의 연장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漁業禁止區域 등의 規制措置 위반을 이유로 日本漁船을 다시 나포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日本은 「漁撈活動에 관한 暫定規則」을 제정하여 조업을 자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公式協定 없이도 5년간 「毛澤東 라인」이 잘 준수되었다. 이러한 日本의 自制措置를 中國도 긍정적으로 받아 들임으로써 제2차 漁業協定이 1963년 11월 북경에서 체결되었다. 이 협정에서 中國은 기존의 漁撈區域을 다소 조정하였는데, 이것은 「毛澤東 라인」의 일부 수정과 1958년의 12해리 領海宣布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후 1965년 12월에 다시 체결된 제3차 民間漁業協定에서는 日本漁船에 대하여 漁具의 網目 크기와 조업 척수에 있어서 보다 많은 규제를 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고, 1975년 政府間漁業協定으로 발전될 때까지 6회에 걸쳐 연장 운영되었다.

## 3) 政府間 漁業協定

中國이 타국과 체결한 漁業協定 중 가장 중요한 것은 1975년 8월 15일 日本과 체결한 日中漁業協定으로서 이것은 과거에 체결되었던 民間協定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으나, 양자간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즉, 쌍방은 協定水域內에서의 水産資源의 보존과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조업을 규제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協定違反에 대한 단속 절차는 旗國主義에 의하기로 한 것(협정 제3조)과 漁業共同委員會 설치를 규정(협정 제6조)한 것이다. 또 쌍방은 자국 어선에 대하여 항해와 조업의 안전, 秩序維持와 海上事故의 원만한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고, 쌍방간에 他方當事國 어선의 緊急避難權을 인정하도록 하였다. 이 협정의 附屬書에서는 中國이 領海基線으로부터 100~150해리의 수역에 걸쳐 2개의 底引網休漁區, 3개의 底引網保護區 및 旋網保護區와 600마력 초과 機船底引網漁船의 操業禁止區域을 설정함으로써 海洋管轄權의 확대를 시도하였는데, 그 외곽선은 韓國 및 日本과의 대략적인 中間線에 해당된다.

日中漁業協定은 주로 日本漁船의 操業活動을 규제하기 위하여 체결되었다는 점에서 韓日漁業協定과 그 성격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 日本은 이 협정을 통하여 中國近海漁場에서 안정된 조업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양국간의 漁業紛爭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IV. 海洋法原則과 問題解決方案

## 1. 黃海와 東中國海漁場에 적용될 海洋法原則

현재 黃海와 東中國海漁場은 각국 領海 및 接續水域과 일부의 漁業協定水域을 제외한 대부분의 어장의 법적 지위는 公海이며, 이들 어장의 隣接沿岸國에의 경제적 기여도에 비추어 資源管理과 합리적 이

용을 위한 共同規範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은 16세기의 Grotius적 사고 즉, 漁業資源의 非枯渴性에 근거하여 어업을 행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漁業資源에 대한 思考方式 자체가 달라졌고 그에 따라 이들 어장의 資源保存을 위한 管理方案을 모색함에 있어서 현재와 같이 公海로 남아 있는 경우와 장차 각 沿岸國이 EEZ를 선포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의 水産資源 보존과 관리에 관한 海洋法原則을 살펴 보고, 問題解決方案을 모색하고자 한다.

UN 海洋法協約 제7장 제2절(제116조~120조)은 公海生物資源의 保存管理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첫째로 모든 국가는 資源保存을 위한 協약상의 의무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公海操業權을 행사할 수 있다(제116조). 즉, 公海漁業權의 성질은 義務履行을 전제로 한 條件附權利이며, 이 때의 操業權과 資源保存義務는 그 비중에 있어서 동등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모든 국가는 自國民에 대하여 公海生物資源의 보존에 필요한 規制措置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제117조).

셋째, 自國民이 동일한 수역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국가들은 관련 자원의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협상을 개시해야 하며, 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地域漁業管理機構를 설립하는 데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제118조).

넷째, 公海生物資源의 許容漁獲量과 기타 保存措置를 취함에 있어서 각국은 MSY를 달성할 수 있는 資源量의 수준을 유지할 것과, 그것을 위하여 關聯魚種 및 從屬魚種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용 가능한 科學情報과 關聯統計는 정기적으로 공개 교환되어야 하며, 이러한 保存措置의 시행은 실질적으로 모든 국가에 대하여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제119조).

公海操業權에 대한 전제로서 이와 같은 의무를 부과하는 이유는 만일 특정 어장에서 한 국가가 自國籍漁船에 대하여 資源保存措置를 취하였을 때, 그 어장에서 조업하는 다른 국가들도 동일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조치는 현실적으로 資源保存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그 어장에서 漁撈操業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가 일정한 地域漁業管理機構를 설립하여 共同保存措置를 취하는 길 밖에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公海上 선박에 대한 旗國 이외의 管轄權이 인정되지 않는 傳統國際法의 기본 구조상 그 효율성을 확신할 수는 없지만, 최근의 北太平洋 公海漁業規制에 성공하고 있는 국제적 관행을 통하여 불 때 黃海와 東中國海漁場에 대한 國際管理制度의 성공도 낙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은 UN 海洋法協約 제5장이 규정하고 있는 EEZ 제도를 각 沿岸國이 黃海와 東中國海漁場에 적용하는 경우이다. 協約 제63조는 同一魚族 또는 關聯魚族이 2개국 이상의 沿岸國의 EEZ에 걸쳐 서식하는 경우, 관련 국가는 직접 또는 地域機構를 통하여 魚族의 保存管理에 필요한 조치에 합의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同一魚族 또는 關聯魚族이 EEZ 境界內外에 동시에 서식하는 경우, 沿岸國과 漁業國은 직접 또는 地域機構를 통하여 그 魚族의 保存에 필요한 조치에 합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내면적 의의는 해양의 魚類는 回游移動하면서 서식하므로 2개국 이상의 EEZ에 걸쳐 분포하거나, EEZ와 公海에 걸쳐 회유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관련 국가 상호

간의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黃海와 東中國海漁場은 지리적·해양학적 특성상 同一生態系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각 沿岸國이 EEZ를 선포하는 경우에도 협약 제63조에 근거한 地域漁業管理機構의 창설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물론 이 경우에 기존의 雙務的 漁業協定の 필요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當事國間的 필요에 입각하여 對日防禦의 성격에서 탈피함으로써 더욱 현실적인 水産資源 保存手段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 2. 問題解決方案

### 1) 地域機構를 통한 共同管理方案

이 방안은 UN 海洋法協約상의 公海生物資源의 保存管理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地域水産機構를 설립하고, 共同管理規範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방식이다. 각 沿岸國의 政治 經濟的 與件上 EEZ 선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또는 EEZ 선포의 전 단계로서 이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각 沿岸國의 領海外側 일정 범위의 수역을 專管水域(이 경우의 專管水域은 韓日漁業協定상의 領海와 일치하는 專管水域과는 법적 성질을 달리한다)으로 설정하고, 專管水域 외측의 수역을 共同管理水域으로 하여, 관련 국가간에 水産資源을 保存管理함에 있어서 EEZ와 유사한 배타적 권리를 제3국에 대하여 공동으로 행사하는 地域水産機構를 설립하는 것이다.

이것은 黃海와 東中國海漁場의 자원이 극도로 枯渴되고 生態系가 파괴됨으로써 漁場性을 상실할 위험에 처한 것으로 판단하여, 地域水産機構로 하여금 자원의 開發 利用보다는 保存政策을 우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 기구는 北太平洋 遡河性魚類 委員會(NPAFC)와 유사한 법적 성격을 갖게 될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공동의 관심 사항인 水産資源의 保存과 利用問題를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써 각 沿岸國의 利害關係를 조정하면서 협력을 창출해 낼 수 있느냐 하는 점이 성공의 관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關係沿岸國의 政治 經濟的 狀況이나 어업의 국내적 기반과 沿岸漁業과의 이해 관계가 각기 상이할 뿐만 아니라, 專管水域 범위의 결정이라든지, 資源量의 결정과 배분, 구체적인 規制 및 團東規範의 마련 등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것으로 예견된다. 그리고 中國이 1992년에 國內法에 의하여 설정한 接續水域의 海洋法上の 합법성은 인정되지만, 그것의 법적 성질이 水産資源의 保存目的과는 합치되지 않는 점도 있으므로 그러한 차원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여지가 있으며, 韓國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들 수역을 양국의 專管水域으로 변경함으로써 조화를 모색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共同管理方式이 시행되면 韓國의 漁業資源保護法은 자연스럽게 그 법적 효력을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될 것이다.

### 2) EEZ 宣布에 의한 分轄管理方案

EEZ 수역 내에서 沿岸國은 그 海床과 下層土 및 上部水域의 자원에 대한 主權의 權利(sov<sup>er</sup>eign right)를 갖는다고 海洋法協約 제56조는 규정하고 있지만, 生物資源에 관한 한 이 권리의 실질적 성질은

排他的 管轄權(exclusive jurisdiction)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며, 沿岸國이 갖는 구체적인 資源管轄權에는 總許容漁獲量(TAC)과 자국의 漁獲能力을 결정하여 水産資源의 재고를 경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92년 말 현재 EEZ를 선포한 국가는 144개 沿岸國 중 112개국으로서 전 세계의 沿岸國 대부분이 이 제도를 수용하였으며, 國際司法裁判所(ICJ)도 1982년 Tunisia/Libya Case에서 「EEZ의 개념은 現代國際法의 일부분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이 제도가 慣習國際法化되었음을 공식 인정한 바 있다.

EEZ를 선포함에 있어서 우선 전제가 되는 것은 境界劃定方式에 관한 것으로서, 국제적인 관행은 衡平原則과 等距離原則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衡平原則을 주장하는 국가 중에도 自然延長原則을 주장하는 국가, 海岸線 길이나 형세 또는 섬의 존재 등 지리적 특수성을 주장하는 국가, 生態系 등을 고려하자고 주장하는 국가 등 매우 다양하다. 그리고 等距離原則을 주장하는 국가 중에는 單純等距離原則을 주장하는 국가, 수정된 等距離原則을 주장하는 국가 등 國益을 우선하는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黃海에 있어서는 이미 1977년에 北韓이 EEZ를 선포하면서 中國과의 等距離線을 경계로 한다고 일방적으로 규정하였고, 남은 문제는 韓國과 中國과의 境界劃定問題인데, 대체로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여기에는 양국의 領海法이 규정하는 領海基線, 특히 直線基線의 채용 문제에 대하여 사전 양해 또는 합의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東中國海에 있어서는 韓國, 中國, 日本, 臺灣 등 4개국 사이에 합의되어야 하는 복잡성이 개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 해역에는 尖閣諸島(釣魚臺) 領有權問題가 미해결 상태로 있으며, 1979년에 선포한 臺灣의 EEZ 처리 문제 등도 난제일 수 있다. 거기에다 이들 해역의 對向國間的 폭이 400해리를 넘지 못하므로 EEZ 境界線劃定問題는 大陸棚 境界劃定問題와 결부되어 첨예하게 대립될 것이 예상된다. 특히, 境界線劃定原則에 관하여 韓國과 日本은 等距離原則을 견지하는 반면, 中國은 衡平原則에 근거한 自然延長原則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각국간의 입장 조정이 가장 큰 난제일 것으로 예견된다.

아무튼 이 해역은 海洋生物資源과 大陸棚資源의 管轄權問題가 동시에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EFZ 보다는 EEZ 선포 방식이 될 것이고, 이 해역에 EEZ 제도가 적용되면 黃海에 있어서의 日中漁業協定の 법적 지위는 韓國에 의하여 공식적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어장에 대한 沿岸國 이외의 국가의 入漁는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水産資源의 합리적인 保存管理는 한층 용이해질 것이고, 이들 어장이 單一生態系를 형성하는 漁場學的 특성상 효율적인 資源管理를 위하여 기존의 漁業協定들은 新海洋法秩序에 부응하도록 개편되어야 할 것이며, 필연적으로 韓中漁業協定도 체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내용은 이들 어장의 水産資源枯渴과 海洋環境 汚染問題를 더 이상 現行管理體制에 방임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그 대책으로서 제시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될 수 있다.

첫째, 黃海와 東中國海漁場의 주요 水産資源에 대한 生態學的인 분석을 통하여 과학적으로 魚種別 管

理對策을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자원의 破壞作用이 심하고 消耗性이 큰 漁法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韓·中·日 3국간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資源保存規範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는 韓中漁業協定을 체결하여 漁業規制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기존 漁業協定들의 법적 성격도 재검토하여 新海洋法秩序에 부합됨과 동시에 漁業協定間의 상호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각 沿岸國의 領海境界 외측 수역에 대한 資源保存과 操業秩序維持를 위하여 共同資源調查를 행하고, 共同管理規範을 마련하여 시행함과 동시에 沿岸國의 管轄水域에 대한 團束權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국가별 許容漁獲量 결정은 현행의 總量規制方式을 지양하고 魚種別 漁業別規制方式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EEZ 선포를 통하여 漁業管轄水域을 분할함으로써 국가별 責任管理制度로 발전해 가야 할 것이다.

## V. 結 論

黃海와 東中國海漁場은 周邊沿岸國인 韓國, 中國, 日本의 水産業에 있어서 절대적인 역할을 해 왔지만, 이미 1970년대 초부터 각국의 경쟁적 조업으로 인하여 限界漁獲量을 초과했으며, 현재는 資源枯竭과 海洋環境의 汚染에 의한 生態系의 파괴로 인하여 漁場性을 점점 상실해 가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특히, 韓國과 中國은 이 어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水産資源 保存管理에 관하여 양국이 보다 적극적인 共同對策을 강구해야 할 것인 바, 이 어장의 海洋法的 特性和 각 沿岸國의 海洋漁業政策 및 기존의 國際漁業關係를 개관하고, 水産資源의 保存管理에 관한 海洋法原則을 검토한 바탕 위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현재 이 漁場의 法的 地位는 公海로서 이 해역의 水産資源을 保存管理하기 위하여는 國際法的 次元에서의 共同規範이 제정되어야 하며, 資源保存을 위한 각국의 協力意志가 문제 해결의 열쇠이다.

둘째, 資源의 효율적인 保存管理를 위하여는 資源量의 파악을 포함한 生態系 전반에 대한 科學調查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기존의 韓日漁業協定과 日中漁業協定은 新海洋法秩序에 부합되도록 개편되어야 하며, 韓中漁業協定의 체결도 같은 맥락에서 성사되어야 한다.

넷째, 장래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地域水産機構를 통한 어장의 共同管理方式과 EEZ 선포를 통한 어장의 分轄管理方式에 관하여 논의하였는 바, 共同管理方式을 먼저 시행한 다음 分轄管理方式으로의 점진적 이행이 현실 여건상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參考文獻

- 高光林, *International Regulation of Fisherie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ose in the North Pacific Ocean*, 1980.
- 權文相·鄭聖哲, “黃·東支那海の魚族資源管理에 관한 共同協力方案”, 「海洋政策研究」, 제5권 1호, 海洋研究所, 1990.
- 金榮球, 「現代海洋法論」, 아세아社, 1988.
- 金亨模, “中國水産業의 動向”, 「水産研究」, 제6호, 韓國水産技術研究院, 1992.
- 朴鍾聲, 「韓國의 領海法」, 法文社, 1985.
- 朴稚榮, “韓國과 經濟水域의 問題”, 「國際法學會論叢」, 제33-2호, 大韓國際法學會, 1988.
- 朴椿浩·柳炳華, 「海洋法」, 民晉社, 1986.
- 白珍鉉, “海洋境界劃定原則의 변천과 韓半島周邊海域의 境界問題”, 「海洋政策研究」, 제6권 1호, 海洋研究所, 1991.
- 柳炳華, 「東北亞地域과 海洋法」, 眞成社, 1991.
- 李秉錡·崔宗和, “韓半島周邊水域의 國際漁業關係와 그 展望”, 「水産海洋教育研究」, 제3권 1호, 韓國水産海洋教育學會, 1991.
- 鄭昌世, “韓·中修交와 近海漁業”, 「水産界」, 제8권 5호, 韓國水産會, 1992.
- 山本草二, 「國際漁業紛爭と法」, 玉川大學出版部, 1977.
- 鷺見一夫, 「200カイリ水域論」, 東京文庫出版部, 1977.
- Barbara Kwiatkowska, *The 200 Mile Exclusive Economic Zone in the New Law of the Sea*,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89.
- Edward L. Miles et al., *The Management of Marine Regions : The North Pacific*,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2.
- Huming Yu, “Marine fishery management in PR China”, *Marine Policy*, Vol.15 - 1, 1991.
- Jeanette Greenfield, *China's Practice in the Law of the Sea*, Clarendon Prees, 1992.
- Tadao Kuribayashi & Edward L. Miles, *The Law of the Sea in the 1990s : A Framework for Futher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Law of the Sea Institute, University of Hawaii, 1992.
- Yang Jinsen, “The Fisheries of the Yellow and East China Seas”, *Oceanus*, Vol.32 - 4, Woods Hole Oceanographic Institute, 1989/1990.
- Zhiguo Gao, “China and the LOS Convention”, *Marine Policy*, Vol.15 - 3, 1991.

# **Law of the Sea Problems on Fishery Resources Conservation and Management in the Yellow Sea and East China Sea**

**Byoung - Gee LEE · Jong - Hwa CHOE**

(National Fisheries University of Pusan)

The Yellow Sea and the East China Sea are the most important fishing grounds for the fishing industry of Korea, China and Japan which are major coastal states of these Seas. But the fishery resources in these fishing grounds are almost exhausted and also the sea region is seriously polluted. Accordingly an international joint countermeasure is necessary to recover the fishery resources and to keep the fishery a continuous industry. The authors inspected the existing fishery policies and international fishery relationship of the three coastal states, and suggested rational conservation and management regime of the fishery resources in these sea regions.

1. At present the legal status of the sea region beyond territorial sea is the high sea, for that reason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urgently needed to establish common regime for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the fishery resources.

2. A series of scientific research on ecological system of fishery resources must be carried out in the sea region first of all for that purpose.

3. The existing Korea - Japanese Fishery Agreement and Sino - Japanese Fishery Agreement should be reformed to coincide with the new legal order of the UNLOS Convention, and the Sino - Korean Fishery Agreement should be concluded newly on the identical line.

4. As a conclusion, a joint conservation and management regime through a regional fishery organization or a individual conservation and management regime through the promulgation of exclusive economic zone by each state can be suggested to resolve the fishery resources conservation problem in the Yellow Sea and the East China Sea.